

국민취업지원제도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요청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

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에게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요청서를 발송하였으나,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동법 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.

2023. 7. 18.

1. 건명: 국민취업지원제도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요청에 따른 공시송달
2. 근거: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28조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9조1항, 제27조2항 및 동법시행령 제12조,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2조
3.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

성명	생년월일	서류의 명칭	서류의 주요 내용		송달불능 사유	주소
			처분사유	처분하고자 하는 내용		
김효성	1984.12.16	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요청	수급자격 불인정 대상임에도 신청서 및 확인서 등을 허위로 제출하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경우에 해당	수급자의 1회차~4회차 구직촉진수당의 지급결정을 취소하고 부정수급액에 대해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	폐문부재	광주광역시 북구 (이하생략)

4. 공고기간 : 2023.7.18 . ~ 2023.8.7.(15일간)

5. 기타사항은 고용센터 국민취업지원제도 담당자 전수지 (☎ 062-609-8779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광 주 지 방 고 용 노 동 청 장

